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안)

○ 사　　업　　명 : 자가통신망 시설장비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북도 경산시(디지털정책과)
○ 제조사·공급사 : ㈜산들정보통신
○ 품　　　　목 : 네트워크스위치, 광다중화장치, 광선로감시 및 IP관리시스템, 망연계장비, 방화벽, VPN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내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네트워크스위치, 광다중화장치, 광선로감시 및 IP관리시스템, 망연계장비, 방화벽, VPN서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오천삼백육십사만칠천원(₩53,647,000원, 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 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산들정보통신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안)

○ 사　　업　　명 : 자가통신망 시설장비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북도 경산시(디지털정책과)
○ 제조사·공급사 : 누리지오시스템
○ 품　　　　목 : 자가통신망 시설 DB데이터 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내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자가통신망 시설 DB데이터 서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사백오십구만구천원(₩4,599,000원, VAT 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 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누리지오시스템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안)

○ 사　　업　　명 : 자가통신망 시설장비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북도 경산시(디지털정책과)
○ 제조사·공급사 : 스파이어 테크놀로지
○ 품　　　　목 : LoRa G/W VPN, IoT Platform, nms 서버 S/W, 네트워크 서버 S/W, 대기환경 S/W, 악취확산 시뮬레이션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내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LoRa G/W VPN, IoT Platform, nms 서버 S/W, 네트워크 서버 S/W, 대기환경 S/W, 악취확산 시뮬레이션 S/W)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삼천이백구십오만팔천원(₩32,958,000원, 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 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스파이어 테크놀로지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안)

○ 사 업 명 : 자가통신망 시설장비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북도 경산시(디지털정책과)
○ 제조사·공급사 : 그렉터
○ 품 목 : 안전관리 기반 시스템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내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안전관리 기반 시스템 S/W)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일천칠백삼십만육천원(₩17,306,000원, 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 월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그렉터 (인)